



제422회국회(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직장어린이집 설치 등 의무 미이행 사업장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금액 상향 〉

■ 이학영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6798호)

2025. 2.

교 육 위 원 회

전문위원 윤상열

【 목 차 】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2
□ 직장어린이집 설치 등 의무 미이행 사업장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금액 상향	2
【참고자료 1】 이행강제금 부과기준	12
【참고자료 2】 직장어린이집 설치 등 관련 규정	13
【참고자료 3】 직장어린이집 설치·운영비 지원	14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이학영의원 등 10인
2. 발의연월일 : 2024. 12. 20.
3. 회부연월일 : 2024. 12. 23.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해야 하고 그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행정청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설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사업장에 대하여 1년에 2회, 매회 1억원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음.

그러나 보건복지부의 「2022년 기준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이행 실태조사」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행강제에도 불구하고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이 27개에 달하여 이행강제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직장어린이집 설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행강제금을 매회 2억원까지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개정함으로써 직장어린이집 설치 이행률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3제1항).

☐ 직장어린이집 설치 등 의무 미이행 사업장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금액 상향

현행	개정안
제44조의3(이행강제금) ①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44조의2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그 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내에 이행할 것을 다시 명할 수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조에 따른 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2회, 매 회 <u>1억원</u> 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제44조의3(이행강제금) ① ----- ----- ----- ----- ----- ----- ----- ----- <u>2억원</u> ----- ----- -----.
② ~ ⑦ (생략)	② ~ ⑦ (현행과 같음)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44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법 시행 후 최초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현행 「영유아보육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¹⁾는 영유아를 양육하는 가정의 육아부담 해소와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 지원을 위하여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직장어린이집 설치 등을 통해 근로자 자녀의 보육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음.

한편, 「2024년 직장어린이집 설치 등 의무이행 실태조사²⁾」에 따르면 2023년 12월 기준 직장어린이집 설치 등 의무이행률은 93.1%로,

설치의무 대상 사업장 1,639개소 중 1,526개소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거나(1,120개소, 68.3%), 위탁보육(406개소, 24.8%)³⁾을 통해 의무를 이행하였고, 113개소(6.9%) 사업장이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를 미이행한 바 있음.

1) 「영유아보육법」

제14조(직장어린이집의 설치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의 사업주는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장의 사업주가 직장어린이집을 단독으로 설치할 수 없을 때에는 사업주 공동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거나, 지역의 어린이집과 위탁계약을 맺어 근로자 자녀의 보육을 지원(이하 이 조에서 “위탁보육”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장의 사업주가 위탁보육을 하는 경우에는 사업장 내 보육대상이 되는 근로자 자녀 중에서 위탁보육을 받는 근로자 자녀가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어린이집의 설치 및 위탁보육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0조(직장어린이집의 설치)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사업주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여야 하는 사업장은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으로 한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7조(위탁보육)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없는 사업주가 지역의 어린이집과 위탁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위탁기간·보육비용 등을 정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법 제14조제2항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이란 100분의 30 이상을 말한다.

2) 2024년 직장어린이집 설치 등 의무이행 실태조사, 교육부(육아정책연구소 수탁보고), 2024년 10월, 2023년 12월 기준 “상시근로자수 500인 이상 또는 여성 상시근로자수 300인 이상” 사업장 대상 실시

3) 「영유아보육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사업장의 사업주가 직장어린이집을 단독으로 설치할 수 없을 때는 지역의 어린이집과 위탁계약을 맺어 근로자 자녀의 보육을 지원하는 “위탁보육”을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이행의 대체수단으로 인정하고 있음. 개별 어린이집과 계약을 맺어 근로자 자녀의 30% 이상을 위탁하여 보육하고, 보육에 필요한 비용의 50% 이상을 지원함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이행현황(2018-2023)】

(단위: 개소)

구분	의무사업장 (A=B+C)	이행(B)			미이행(C)
		계	설치	위탁보육	
'23년	1,639	1,526(93.1%)	1,120	406	113(6.9%)
'22년	1,602	1,466(91.5%)	1,088	378	136(8.5%)
'21년	1,486	1,351(90.9%)	1,016	335	135(9.1%)
'20년	1,432	1,301(90.9%)	980	321	131(9.1%)
'19년	1,445	1,303(90.2%)	987	316	142(9.8%)
'18년	1,389	1,252(90.1%)	957	295	137(9.9%)

자료: 교육부(2023년 기준 직장어린이집 설치 등 의무이행 실태조사)

【2023년도 사업장 유형별 설치의무 이행현황】

(단위: 개소, %)

구분		이행			미이행	계
		설치	위탁보육	계		
전체		1,120 (68.3)	406 (24.8)	1,526 (93.1)	113 (6.9)	1,639 (100.0)
사업장 유형	국가기관	155 (96.9)	2 (1.3)	157 (98.1)	3 (1.9)	160 (100.0)
	지자체	146 (69.9)	58 (27.8)	204 (97.6)	5 (2.4)	209 (100.0)
	학교	60 (54.6)	44 (40.0)	104 (94.6)	6 (5.5)	110 (100.0)
	대학병원	48 (65.8)	24 (32.9)	72 (98.6)	1 (1.4)	73 (100.0)
	기업	711 (65.4)	278 (25.6)	989 (91.0)	98 (9.0)	1087 (100.0)

자료: 교육부(직장어린이집 설치 등 의무이행 실태조사)

현행법은 미이행 사업장에 대한 이행강제 수단으로 지자체장(시·도지사, 시·군·구청장)의 이행명령을 두고 있으며, 2차 이행명령까지도 불이행하는 경우에 1년에 2회, 매회 1억원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되, 미설치 기간·사유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중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⁴⁾

다만, 개정안은 이행명령에도 불구하고 직장어린이집 설치 등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의무 미이행 사업장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현행 매회 1억원⁵⁾에서 매회 2억원까지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강화함으로써 직장어린이집 설치 등 이행률을 제고하려는 것임.

따라서, 개정안과 같이 직장어린이집 설치 등 의무 미이행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금액을 상향함으로써 직장어린이집 설치 이행률을 제고하고, 이를 통해 영유아 양육 가정의 양육부담 경감 및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한편, 이행강제금은 의무불이행에 대해 금전적 제재를 가하는 간접적인 의무이행확보 수단으로, 의무위반행위의 시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부과대상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할 수준의 금액을 반복적으로 부과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데,

4) 「영유아보육법」

제44조의2(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장에 대한 이행명령)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4조에 따른 사업장의 사업주가 직장어린이집의 설치 등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44조의3(이행강제금) ①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44조의2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그 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내에 이행할 것을 다시 명할 수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조에 따른 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2회, 매회 1억원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직장어린이집 미설치 기간·사유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금액을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5) 보건복지부는 제44조의3(이행강제금) 신설(2014.5.20.)시 이행강제금을 1억원으로 정한 것은, 어린이집의 운영 및 수탁 보육 중인 영유아의 보육에 필요한 비용의 100분의 50에 상응하는 ‘연령별 정부보육료 평균 지원 단가의 3개월분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이행강제금으로 설정하였다고 함. 단 사업주의 무한정한 부담을 방지하고자 ‘매회 1억원’으로 한도를 설정한 것임(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장기윤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125909호) 검토보고서 p. 8 참고)

「행정기본법」 제31조6)에 따르면 이행강제금의 부과 금액, 산정기준, 연간 부과 횟수나 횟수의 상한 등을 명확하게 법률에서 규정하되, 의무 불이행의 동기, 정도 및 상습성 등을 고려하여 부과금액을 가중하거나 감경하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이행강제금의 부과금액은 개별법의 목적, 의무 불이행의 동기, 위반내용의 정도 및 상습성 등을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으로 보임.

다만, 개정안의 직장어린이집 설치 등 의무 미이행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금액 상향과 관련하여 현행 이행강제금의 부과금액이 타 입법례와 비교할 때 높은 수준이라는 점과,

6) 「행정기본법」

제31조(이행강제금의 부과) ① 이행강제금 부과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는 이행강제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 또는 제5호를 규정할 경우 입법목적이나 입법취지를 훼손할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부과·징수 주체
2. 부과 요건
3. 부과 금액
4. 부과 금액 산정기준
5. 연간 부과 횟수나 횟수의 상한

② 행정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이행강제금의 부과 금액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1. 의무 불이행의 동기, 목적 및 결과
2. 의무 불이행의 정도 및 상습성
3. 그 밖에 행정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유

③ 행정청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미리 의무자에게 적절한 이행기간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행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는 뜻을 문서로 계고(戒告)하여야 한다.

④ 행정청은 의무자가 제3항에 따른 계고에서 정한 기한까지 행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행강제금의 부과 금액·사유·시기를 문서로 명확하게 적어 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행정청은 의무자가 행정상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반복하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의무자가 의무를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⑥ 행정청은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행강제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강제징수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 113개소 사업장⁷⁾의 미이행 사유를 살펴보면, ‘설치장소 확보의 어려움(50.4%)’, ‘사업장 특성상 이행 어려움(28.3%)’, ‘사업장 내 이용대상 부족(44.2%)’에 대한 응답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개별 사업장의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기 어려운 현실적인 여건도 감안할 필요도 있다고 보임.

【이행강제금 부과 관련 입법례】

부과금액	법률	부과대상
1억원 이내	전기통신사업법 제13조	공공의 이익 침해 판단으로 주식매각 등 명령 미이행에 대해 하루당 부과할 수 있는 이행강제금은 그 소유한 주식 매입가액의 1천분의 3 이내로 하되, 주식 소유와 관련 되지 아니한 사항인 경우에는 1억원 이내의 금액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47조	정보 제공 또는 열람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마다 1억원의 범위에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일 수를 고려하여 이행강제금 부과
3천만원 이하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1조의2	보호조치결정을 받은 후 그 정해진 기한까지 보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
	근로기준법 제33조	구제명령을 받은 후 이행기한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9조의2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설치한 이동편의시설을 설치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유지·관리한 교통사업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5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설치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설치한 자
2천만원 이하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0조의4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처분권자
1천만원 이하	공항시설법 제70조	항공장애 표시등 또는 표지를 설치하지 아니한 자
	도로법 제100조	조치명령이나 원상회복 명령에서 정한 시정기간 내에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500만원 이하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의3	광고물등을 제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명령을 받은 후 그 조치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관리자등

자료: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기준일 2025.1.20.

7) 2024년 직장어린이집 설치 등 의무이행 실태조사(pp. 115~117)에 따르면, **설치의무 이행사업장**의 평균 상시근로자수는 1,604명, 근로자의 취학전 자녀수는 268명이고, **미이행 사업장**은 평균 상시근로자가 781명, 평균 보육수요도 93명으로 설치의무 이행 사업장에 비해 근로자 수, 취학전 근로자 자녀수 모두 낮은 수준으로 나타남. 또한, 향후 직장어린이집 설치 계획이 있다고 응답한 사업장은 113개 미이행 사업장 중 18.6%(21개소)에 불과함

【2023년도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 사유[1순위+2순위¹⁾]】

(단위: %, (개소))

구분	설치장소 확보 어려움	이용대상 부족	직접설치비용 부담	관리/운영비용 부담	설치관련정보 부족	의무미이행시 제재수준 낮음 ²⁾	사업장 특성상 이행 어려움	기타	(수)
전체	50.4	44.2	14.2	15.0	6.2	0.9	28.3	40.7	(113)
국가기관	0.0	0.0	33.3	0.0	0.0	0.0	33.3	33.3	(3)
지자체	60.0	20.0	0.0	0.0	0.0	0.0	20.0	0.0	(5)
학교	33.3	0.0	16.7	0.0	0.0	0.0	33.3	16.7	(6)
대학병원	100.0	0.0	0.0	0.0	0.0	0.0	0.0	0.0	(1)
기업	29.6	24.5	11.2	11.2	5.1	1.0	13.3	4.1	(98)

주: 1) 1순위와 2순위 비율을 각각 계산하여 합한 결과로 총계는 200%임

2) 2021년까지 '설치관련 이행 규정 부재' 항목이었음

자료: 교육부

참고로, 「2024년 직장어린이집 설치 등 의무이행 실태조사」에 따르면, 직장어린이집(1,120개소)을 설치한 사업주는 월평균 운영비로 약 6,044만원을 지원하고 있고, 위탁보육(406개소)을 하는 사업주는 소속 직원 자녀 1인당 월평균 약 2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2023년도에 신규로 설치한 직장어린이집(23개소)의 설치비 총액 평균 금액은 약 12억원 규모로 나타남.

【직장어린이집 월평균 운영비 지원금(2023년)】

(단위: 원, 개소)

2천만원 미만	2~4천만원 미만	4~6천만원 미만	6~8천만원 미만	8천~1억원 미만	1~2억원 미만	2억원 이상	무응답	평균	계
401 (35.8)	319 (28.5)	124 (11.1)	69 (6.2)	34 (3.0)	61 (5.4)	82 (7.3)	30 (2.7)	60,437,723	1,120 (100.0)

주: 2023년 기준 월 평균 운영비 지원금

※ 단, 사업주가 직접 입력한 자료로 해당자료에 대한 검증은 불가하며, 근로복지공단 설치비·운영비 지원금액은 미포함

자료: 교육부(2023년 기준 직장어린이집 설치 등 의무이행 실태조사)

【위탁보육 아동 1인당 월평균 지원 금액(2023년 기준)】

(단위: 개소, %, 원)

15만원 미만	15~20만원 미만	20~30만원 미만	20~30만원 이상	평균	계
19 (4.7)	337 (83.0)	42 (10.3)	8 (2.0)	202,225	406 (100.0)

자료: 교육부(2023년 기준 직장어린이집 설치 등 의무이행 실태조사)

【신규 설치 사업장 평균 비용(2023년 기준)】

(단위: 원(개소))

전체	국가기관	지자체	대학병원	기업
1,214,739,978 (23)	989,248,650 (4)	1,774,119,142 (2)	1,579,000,001 (2)	1,151,719,107 (15)

주: 단, 본 조사의 비용 관련 문항은 사업장 담당자의 입력 수치에 따라 분석한 것으로 평균 수치를 일반화하여 해석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자료: 교육부(2023년 기준 직장어린이집 설치 등 의무이행 실태조사)

또한, 이행강제금 부과금액의 산정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5조의3제1항 및 별표 1의3([참고자료 1])에 따라 ‘사업장 내 보육대상이 되는 근로자 자녀의 수와 자녀 1명당 사업주의 월평균 부담액’에 따라 이루어지는데,

2024년에 공표된 미이행 사업장(25개소⁸⁾)에 대한 부과기준에 따른 이행강제금 최대 부과가능액은 평균 약 1억원(평균 보육수요 123명)이고,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인 사업장이 4개소, 2억원 이상인 사업장이 3개소임.⁹⁾

8)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장 명단공표 미이행 현황(<https://www.moe.go.kr/boardCnts/listRenew.do?boardID=72793&renew=72793&m=020301&s=moe>)

※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미이행 사업장 중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0조의5에 따라 공표에서 제외된 사업장은 총 88개소이며 공표제외 사유로는 ‘직장어린이집 설치 대상이 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가 60개소(68.2%)로 가장 많았고, ‘해당 사업장이 직장어린이집 설치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건축비용의 일부를 집행하는 등 직장어린이집을 설치 중인 경우’가 26개소(29.5%),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의 특성상 보육수요가 없는 경우 등 명단 공표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2개소(2.3%)임.

개정안에 대해 교육부는 직장어린이집은 근로자의 보육부담을 완화하고 일·가정 양립지원을 위한 핵심제도로, 현행법상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는 직접설치, 공동설치, 위탁운영 등의 다양한 방식으로 인정하느냐 사업장의 개별 상황에 맞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유연성을 제공하고 있고,

이행강제금은 반복적으로 의무를 미이행하는 경우에만 부과되므로 500인 이상이라는 사업장의 경제적 규모를 고려할 때 미이행에 대한 실질적인 억제효과를 강화할 수 있는 합리적 조치로 보이며, 강제금이 낮아 설치의무를 지키지 않고도 경제적 이익을 얻는 경우 법적 형평성을 저해할 수 있는바 강한 경제적 제재가 필요하므로 이견이 없다는 의견임.

9) 이행강제금 최대 부과가능액 산출 예시

- (계산방식) (해당 사업장 근로자 자녀수의 65%) x (연령별 보육료 지원단가 평균의 50%*) x (6개월**) (단, 회당 최대 1억원) * 직장어린이집 운영 또는 위탁보육 사업장의 1개월 평균 부담금

** 1년에 2회 부과하므로 6개월로 산정

※ 정부지원단가(월): '24년 연령별 보육료 지원단가 평균 422,250원
(0세반 540,000원, 1세반 475,000원, 2세반 394,000원, 3-5세반 280,000원)

- 24년 5월 공표된 미이행 사업장(25개소) 기준

사업장별 보육대상 영유아수		이행강제금(1회당, 최대)	
영유아수	사업장개소수	보육대상	이행강제금
100명 미만	16	50명	41백만원
100명 이상~200명 미만	5	100명	82백만원
200명 이상~300명 미만	2	200명	165백만원
300명 이상~400명 미만	1	300명	247백만원
400명 이상	1	400명	329백만원
계	25	500명	411백만원

※ 산출식: (보육대상영유아수×65%)×(422,250원×50%×6개월)

한편,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저출산 극복에 대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고려할 때 기업의 보육지원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에는 공감하나,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이행이 어려운 사업장 여건(장소확보 어려움, 보육수요 부족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시설설치 중심의 규제를 강화하는 이행강제금 상향은 지나치게 과도한 조치로 실효성에 한계가 있으므로, 이행강제금 상향 등의 규제강화보다는 기업의 자발적인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양질의 직장보육 여건을 조성할 수 있는 인센티브 중심 정책 전환이 시급하다는 취지로 신중검토 의견임.

문 의 처
02)6788-5192

【참고자료 1】 이행강제금 부과기준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별표 1의3] <개정 2019. 10. 29.>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제25조의3제1항 관련)

1.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44조의3제1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가. 최근 3년간 이행강제금의 부과처분을 2회 이상(제25조의3제2항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 받은 경우

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의무이행 실태조사에 응하여 법 제44조의2에 따른 이행명령 및 법 제44조의3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처분을 받지 않은 경우

2. 이행강제금은 「(사업장 내 보육대상이 되는 근로자 자녀의 수 × 65/100) × 사업장 내 보육대상이 되는 근로자 자녀 1명당 사업주의 월 평균 부담액 × 6」에 따라 산정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사업장 내 보육대상이 되는 근로자 자녀의 수"와 "사업장 내 보육대상이 되는 근로자 자녀 1명당 사업주의 월 평균 부담액"은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사업장 내 보육대상이 되는 근로자 자녀의 수는 의무이행 실태조사에서 확인된 수를 말한다. 다만, 의무이행 실태조사를 받은 날부터 법 제44조의3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날 사이에 그 수가 변경되었음을 사업주가 입증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수를 말한다.

나. 사업장 내 보육대상이 되는 근로자 자녀 1명당 사업주의 월 평균 부담액은 법 제34조에 따른 무상보육을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매달 지원하는 금액(이하 "정부지원액"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text{만 0세인 자녀 1명당 정부지원액}) + (\text{만 1세인 자녀 1명당 정부지원액}) + (\text{만 2세인 자녀 1명당 정부지원액}) + (\text{만 3세인 자녀 1명당 정부지원액}) + (\text{만 4세인 자녀 1명당 정부지원액}) + (\text{만 5세인 자녀 1명당 정부지원액})] \times 50/100 \div 6$$

【참고자료 2】 직장어린이집 설치 등 관련 규정

□ 직장어린이집 설치 등 의무 이행여부 판단 기준

① 직장어린이집 설치·운영

- 사업주가 단독·공동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고,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50% 이상을 부담

② 위탁보육 실시

- 어린이집과 계약을 체결, 근로자 자녀의 30% 이상을 위탁하여 보육하고, 보육에 필요한 비용의 50% 이상을 지원

⇒ 보육에 필요한 비용은 부모보육료(부모가 바우처로 어린이집에 지불하는 비용)의 총합을 의미하며, 그 비용의 50% 이상을 회사가 어린이집에 추가로 지원

□ 미이행 사업장에 대한 이행강제 수단

① 이행명령 부과(영유아보육법 제44조의2)

- 사업주가 직장어린이집 설치 등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지자체장(시·도지사, 시·군·구청장)이 이행명령을 부과할 수 있으며, 재차 이행명령 가능

② 이행강제금 부과(영유아보육법 제44조의3)

- 2차 이행명령까지 불이행시 1년에 2회, 매회 1억 원 범위에서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가능

- (부과금액) (해당사업장 근로자 자녀수의 65%) × (연령별 보육료 지원단가 평균의 50%*) × (6개월**)을 부과(단, 회당 최대 1억원)

* 직장어린이집 운영 또는 위탁보육 사업장의 1개월 평균 부담금

** 1년에 2회 부과 가능하므로 1회 부과시 적정하다고 산정한 금액

- (가중부과)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미이행 사업장이 아래 사항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중부과 가능 (시행령 [별표1의3] 제1호)

· 최근 3년간 이행강제금의 부과처분을 2회 이상(시행령 제25조의3제2항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 받은 경우 * 2019. 11. 1. 이후 받는 이행강제금의 부과처분부터 횟수 산정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의무이행 실태조사에 응하여 법 제44조의2에 따른 이행명령 및 법 제44조의3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처분을 받지 않은 경우 * 2019. 11. 1. 이후부터 적용

□ 조사 불응 사업장에 대한 1억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영유아보육법 제56조)

- 직장어린이집 설치 등 의무이행에 관한 실태조사 대상 사업장의 사업주는 실태조사에 따라야 함(영유아보육법 제14조의2)

- 직장어린이집 설치 등 의무이행 실태조사에 따르지 않은 경우 1차 위반 시 5천만원, 2차 위반 및 3차 이상 위반 시 각각 1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함
(영유아보육법 제56조 및 시행령 별표2, 2022.12.11.시행)

자료: 2025년도 보육사업안내(교육부)

【참고자료 3】 직장어린이집 설치·운영비 지원

- 고용노동부(근로복지공단)는 아래 기준에 따라 사업주에게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 지원

< 직장어린이집 설치비·인건비·운영비 지원기준 및 한도 >

구분	지원 종류	내역			지원한도	지원기준 및 비율		
설치 비	무상 지원	대규모 기업	단독		시설전환비	3억 원	소요비용의 60% * 영아·장애아 전담 시설: 80%	
			공동			6억 원		
		우선지원 대상기업	공동	단독		시설전환비 시설건립비 시설매입비	4억 원	소요비용의 90% (시설매입비: 40%)
				우선지원대상 기업2~4개소인 사업주 단체			10억 원	
				우선지원대상 기업5개소 이상인 사업주 단체			20억 원	
			(공동)		시설개보수비		1억 원	
		대규모기업		교재교구비 - 교체비: 3년 교체시마다 3천만원	5,000만 원	소요비용의 60% * 영아·장애아 전담 시설: 80%		
		우선지원대상기업			7,000만 원	소요비용의 90%		
인건 비	인건비 지원	대규모기업		원장, 보육교사, 조리원	1인당 월 최대 60만 원	월 평균 근무시간에 따라 지원		
		우선지원대상기업			1인당 월 최대 138만 원*			
	중소기업 운영비 지원	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 운영비			월 200만 원 ~ 520만 원	매월 말일 보육아동 현원에 따라 지원		

자료: 2025년도 보육사업안내(교육부)